

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」 행정명령 변경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※ 강원도 공고 제2023-143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.

2023년 3월 20일
강 원 도 지 사

<주요 변경사항>

구분	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	
	<개정 전>	<개정 후>
내용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※ 대형시설(마트·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는 과태료 부과 예외로 함

1. 적용지역 : 강원도 전 지역

2. 기 간 : 2023. 3. 20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
3. 처분당사자

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*

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
4. 처분내용 :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·시설(①)에서 마스크(②)를 올바르게 착용(③)할 것

① 의무화 장소·시설

- (마스크 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*

*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* (제외장소) 사무동·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1.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

-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**요양병원**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조)에 따른 **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**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

2. 정신건강증진시설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정신건강복지법"으로 기재)(제3조)에 따른 **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**
 - * (제외시설)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(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), 국립정신병원
-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요양시설**
-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** :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(입소시설)
 - * (제외시설)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(주간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, 생상품판매시설, 종합시설(비입소시설))

3. 장애인복지시설

- 장애인복지법(제58조)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**입소형 시설** :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, 피해장애아동 쉼터
 - * (제외시설) 지역사회 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, 생상품 판매시설

■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의료기관

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-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**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2조)에 따른 보건진료소** 포함

■ 약사법(제2조)에 따른 약국

- (관리 의무)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
 -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
- ※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 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-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 -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② 마스크 종류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 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 - 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** 식약처 권고사항('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*도 가능 함
 - 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③ 착용법 관련

-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 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5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~4호

6. 처분사유 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3. 3. 20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
8.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 기준 등

- 과태료 부과근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, 제5 항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 별표3
- 과태료 부과권자 :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- 단속내용 :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·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- 단속방법
 - (지도·점검) 담당자는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·장소에 대해 지도·점검 실시
 -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 - 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 - 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 - 단,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
- 과태료 부과금액
 -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 :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4항)
 - 의무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: 과태료의 부과기준*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2항)
- *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-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
 -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9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-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)
 -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
 - 24개월 미만의 영유아
 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 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 -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
 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-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*과 있을 때
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
-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
-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응급 구조활동 등)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응응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벽·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(마트·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

10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

11. 불복절차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

12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
-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